

순천시 공고 제2023-768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공무원 출장여비 지급기준 정비

2. 주요내용

-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 상한선 증액
 - (현 행)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5만원
 - (개 정) 서울특별시 10만원, 광역시 8만원, 그 외 7만원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운임 지급 기준 구체화
 -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운임 절감 시 일비 추가 지급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이용 시 단서 추가

3. 입법예고 기간 : 2023. 3. 27 ~ 2023. 4. 17.(21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jw2293@korea.kr (팩스) 061-749-4624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회계과(☎ 061-749-56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밖의 지역 70,000)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8%;">구 분</th> <th style="width: 12%;">철도 운임</th> <th style="width: 12%;">선박 운임</th> <th style="width: 12%;">항공 운임</th> <th style="width: 12%;">자동차 운임</th> <th style="width: 46%;">숙박비 (1박당)</th> </tr> </thead> <tbody> <tr> <td>제1호</td> <td>실비 (특실)</td> <td>실비 (1등급)</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td> </tr> <tr> <td>제2호</td> <td>실비 (일반실)</td> <td>실비 (2등급)</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 50,000)</td> </tr> </tbody> </table> <p>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p>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p>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 50,000)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운임 및 숙박비(제4조 관련)</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8%;">구 분</th> <th style="width: 12%;">철도 운임</th> <th style="width: 12%;">선박 운임</th> <th style="width: 12%;">항공 운임</th> <th style="width: 12%;">자동차 운임</th> <th style="width: 46%;">숙박비 (1박당)</th> </tr> </thead> <tbody> <tr> <td>제1호</td> <td>실비 (특실)</td> <td>실비 (1등급)</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td> </tr> <tr> <td>제2호</td> <td>실비 (일반실)</td> <td>실비 (2등급)</td> <td>실비</td> <td>실비</td> <td>실비 (상한액 : <u>서울특별시</u> <u>100,000,</u> <u>광역시 80,000,</u> <u>그밖의 지역</u> <u>70,000)</u></td> </tr> </tbody> </table> <p>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p> <p><u>1의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2.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p> <p>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p>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u>서울특별시</u> <u>100,000,</u> <u>광역시 80,000,</u> <u>그밖의 지역</u> <u>70,000)</u>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 50,000)																																
구 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u>서울특별시</u> <u>100,000,</u> <u>광역시 80,000,</u> <u>그밖의 지역</u> <u>70,000)</u>																																

현행	개정안
<p>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p> <p>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p>	<p>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u>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u></p> <p>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p>